

당첨자 자격서류 접수 안내

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오산 세교2지구(A-14BL) 우미'린 사전당첨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
살기좋은 아파트로 보답하기 위해 성실 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코로나19 예방 및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등으로 인하여
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접수를 사전당첨자에 한해 현장접수처 방문일정을
홈페이지 예약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방문일정을 반드시 예약해주시기 바라며,
미예약 또는 예약일자 외 방문 시 현장접수처 출입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
선택이 불가능한 시간대는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선택 가능 시간대로 신청하셔야 하며
당사 콜센터 전화요청 또는 현장접수처 방문을 하셔도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
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| 오산 세교2지구(A-14BL) 우미'린 사전당첨자 주요 일정 |

구분	서류접수	계약체결
서류제출 기한	2022년 1월 3일(월) ~ 1월 12일(수) 10일간, 09:30~17:00	2022년 1월 18일(화) ~ 1월 23일(일) 6일간, 09:30~17:00
대상	특별공급 / 일반공급 사전당첨자	특별공급 /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중 서류검수(적격) 완료자
홈페이지 예약접수 기간	2021년 12월 24일(금) 10시 ~ 12월 28일(화) 17시까지	2022년 1월 12일(수) 10시 ~ 1월 17일(월) 17시까지
장소	우미'린 현장접수처(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-3) / ☎ 031) 957-1600	

- 방문인원 : 사전당첨자 본인(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)만 입장 가능 ※ 동반자 입장불가
- 방문지참물 : 당사 홈페이지 사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안내 참조(각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 지참 및 대리접수 시 위임용 서류 일체)
-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는 일자별 예약고객에 한해서만 입장가능하며, 예약시간에 늦을 경우 접수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
- ※ 상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제출하여 서류검수결과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사전공급계약 체결이 가능

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1.11.30(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,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○		서약서(무주택, 사전당첨자)	본인	-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, 운전면허증 등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-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 필수, 대리발급분 접수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(단, 대리인 계약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, 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-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(2021.11.30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	직계존속	- 국토교통부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(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		○		직계비속	- 국토교통부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· 30세 미만 :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· 30세 이상 :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-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 복문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 '상세'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 [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
	○		부동산소유현황 (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)	본인 및 세대원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· 발급기관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*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· 토지 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· 공동주택/단독주택 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공동주택가격 열람/단독주택가격 열람 · 기타 건축물 : 위택스-지방세정보-시가표준액 조회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자녀	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-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-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(또는 배우자)	-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- 입양의 경우
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(또는 배우자)	-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	

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1.11.30(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,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지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(계속하여 90일, 연간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본인 및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·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·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	○	출입국 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인감도장	청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
	○		위임장	청약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소득증빙 서류

건강보험	소득입증 제출서류		발급처	
직장 가입자	일반 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'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 직장/ 세무서 ② 해당 직장	
	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 해당 직장	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①, ② 해당 직장	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 직장	
지역 가입자	자영 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 /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, 세무서	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증명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②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③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, 세무서 ② 세무서 ③ 세무서 또는 등기소	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 ② 등기소	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※ 직인날인 필수	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해당 직장	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	
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: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 직장	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(현장접수처 비치) ※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1일부터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현장접수처 비치		